



|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-|
| 의안번호 | 제101호 |
|------|-------|

|   |
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<br/>일부개정조례안</b></p> |
|---|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논산시장         |
| 제출연월일 | 2020. 8. 25. |

#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<b>의안<br/>번호</b> | <b>제101호</b>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0. 8. 25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비서요원은 '95년 『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방침』에 따라 운영중이었으나

|  |
|--|
| <p>*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요원 정원기준(시군구) - 1995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구 50만명 이상 4명 (별정5급 1, 별정6급 1, 별정7급 1, 기능직 1)</li> <li>- 인구 30만명 이상 3명 (별정6급 1, 별정7급 1, 기능직 1)</li> <li>- 인구 30만명 미만 2명 (별정6급 1, 기능직 1)</li> </ul> |
|--|

- 『2020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』 지침에 의거 비서인력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존 관련 지침('95)이 폐지됨에 따라
- 부서간 협업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현행 비서실장의 직급을 과(課)단위 부서장의 직급과 대등하게 상향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비서실장의 직급을 현행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함
- ※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.

| 구 분       | 당초  | 변경 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|-----|----|
| 일반직 5급    | 59  | 60  | 증1 |
| 일반직 6급 이하 | 974 | 973 | 감1 |

※ 우리시 총 정원 변동없음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
- 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2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3) 규제심사 : 대상아님
- 4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0. 07. 01. ~ 2020. 07. 20.(20일간)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붙임과 같음
- 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(☎ 041-635-2332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행정지원과장  | 김 병 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인 사 팀 장 | 이 재 성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  | 국 광 호<br>(746-5233) |

【별표 6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    | 총 계   | 집행기관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의회 사무기구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      | 소 계   | 본 청  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면동 | 소계      | 의회 사무국 |
| 총 계     | 1,089 | 1,073 | 1,073 |      |     |     | 16      | 16     |
| 정무직 계   | 1     | 1     | 1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시 장     | 1     | 1     | 1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일반직 계   | 1,043 | 1,027 | 1,027 |      |     |     | 16      | 16     |
| 3급      | 1     | 1     | 1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4급      | 6     | 5     | 4     | 1    |     |     | 1       | 1      |
| 5급      | 60    | 58    | 35    | 6    | 2   | 15  | 2       | 2      |
| 6급 이하   | 973   | 960   | 960   |      |     |     | 13      | 13     |
| 전문경력관   | 3     | 3     | 3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별정직 계   | 2     | 2     | 2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6급상당 이하 | 2     | 2     | 2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연구직 계   | 4     | 4     | 4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연구관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연구사     | 4     | 4     | 4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지도직 계   | 39    | 39    | 39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지도관     | 4     | 4     | 4 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| 지도사     | 35    | 35    | 35    |      |     |     |         |        |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개 정 안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
| <b>【별표 6】</b><br><b>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</b><br>(제22조제1항 관련)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<b>【별표 6】</b><br><b>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</b><br>(제22조제1항 관련)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구 분  | 총 계   | 집행기관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의회 사무기구 |        | 구 분  | 총 계   | 집행기관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의회 사무기구 |        |
|  |       | 소 계   | 본 청 | 직속 기관 | 사업 소 | 읍면 동 | 소 계     | 의회 사무국 |  |       | 소 계   | 본 청 | 직속 기관 | 사업 소 | 읍면 동 | 소 계     | 의회 사무국 |
| 총 계  | 1,089 | 1,073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16      | 16     | 총 계  | 1,089 | 1,073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16      | 16     |
| 정무직 계  | 1     | 1     | 1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정무직 계  | 1     | 1     | 1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시 장  | 1     | 1     | 1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시 장  | 1     | 1     | 1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일반직 계  | 1,043 | 1,027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16      | 16     | 일반직 계  | 1,043 | 1,027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16      | 16     |
| 3급   | 1     | 1     | 1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3급   | 1     | 1     | 1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4급   | 6     | 5     | 4   | 1     |      |      | 1       | 1      | 4급   | 6     | 5     | 4   | 1     |      |      | 1       | 1      |
| 5급   | 59    | 57    | 34  | 6     | 2    | 15   | 2       | 2      | 5급   | 60    | 58    | 35  | 6     | 2    | 15   | 2       | 2      |
| 6급 이하  | 974   | 961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13      | 13     | 6급 이하  | 973   | 960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13      | 13     |
| 전문 경력관   | 3     | 3     |     |       | 3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전문 경력관   | 3     | 3     |     |       | 3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별정직 계  | 2     | 2     |     |       | 2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별정직 계  | 2     | 2     |     |       | 2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6급상당 이하  | 2     | 2     |     |       | 2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6급상당 이하  | 2     | 2     |     |       | 2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연구직 계  | 4     | 4     |     |       | 4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연구직 계  | 4     | 4     |     |       | 4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연구관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연구관  | 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연구사  | 4     | 4     |     |       | 4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연구사  | 4     | 4     |     |       | 4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지도직 계  | 39    | 39    |     |       | 39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지도직 계  | 39    | 39    |     |       | 39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지도관  | 4     | 4     |     |       | 4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지도관  | 4     | 4     |     |       | 4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| 지도사  | 35    | 35    |     |       | 35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 지도사  | 35    | 35    |     |       | 35   |      |         |        |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「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 
별표 6 및 별표 7

### 2. 비용추계의 내용

#### 가. 비용추계 전제

- 비서실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6급이하 1명을  
5급으로 직급 조정함

#### 나. 비용추계 결과

- 18,063천원 소요(2020년 하반기 기준 )
  - 인 건 비 : 16,647천원
  - 물 건 비 : 510천원
  - 경상이전 : 906천원

#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시비(100%)

### 3. 작성자

행정지원과장 김 병 호

#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     |       | 1차년도<br>(2020) | 2차년도<br>(2021) | 3차년도<br>(2022) | 4차년도<br>(2023) | 5차년도<br>(2024) | 계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 출      |       | 18,063         | 36,438         | 37,278         | 38,137         | 39,017         | 168,933 |
| 인건비      |       | 16,647         | 34,073         | 34,870         | 35,685         | 36,520         | 157,795 |
| 물건비      |       | 510            | 510            | 510            | 510            | 510            | 2,550   |
| 경상이전     |       | 906            | 1,855          | 1,898          | 1,942          | 1,987          | 8,588   |
| 재원 조달    |       | 18,063         | 36,438         | 37,278         | 38,137         | 39,017         | 168,933 |
| 자체<br>수입 | 소 계   | 18,063         | 36,438         | 37,278         | 38,137         | 39,017         | 168,933 |
|          | 지방세수입 | 18,063         | 36,438         | 37,278         | 38,137         | 39,017         | 168,933 |
| 의존<br>재원 | 소 계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|
|          | 보조금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|
| 기 금      |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|
| 특별회계     |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|
| 기 타      |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|

※ 공무원봉급 3개년 평균 인상률(2.34%) 적용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12조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

**제24조(정원의 관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